

##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록

|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|---|
| 회의 개최부서     |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  |
| 일시 / 장소     | 2018. 11. 27(화) 18:00~20:30 / 세종시청 5층 집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참석자         |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<br>- 이상인(위원장), 서성규, 신상두, 김지훈, 전응구, 변영호,<br>이영민, 이연숙, 이영선, 이희경 |
| 배석자         | 기획조정실장, 정책기획관, 의회협력담당,<br>김미영 주무관, 김희진 주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정 안건       | 의정활동비 지급기준, 월정수당 지급기준, 주민의견수렴방식 선택  |
|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| 주민의견수렴방식은 공청회 개최로 결정  |

(위원장) 안녕하십니까?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상인입니다.  
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재적 10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(의사봉3타)

- 지난 2차 회의 때 참석 못 하신 위원이 계셔서 지난 2차 회의 때 결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회의록은 발언내용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위원들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개 전 회람한 뒤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같은 월 150만원을 유지하고,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감액요인보다는 증액요인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겠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.6% 초과 인상에 대한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.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 내렸습니다. 잠정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통해 지난 2차 회의의 결과는 번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기坦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주민수 증감률, 재정자립도, 의정활동실적 등을 감안해서 잠정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의회협력담당으로 요청했습니다. 추가자료 요청사항으로는 의원 1인당 주민수,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비율, 지방자치단체별 주민평균소득수준자료, 인구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 단체의 평균소득수준, 과거 시의원들의 범죄경력 현황 자료, 2009~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현재 의정비가 세종시 예산규모 차지하는 비율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.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심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회협력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회의가 길어질 경우 생리적인 현상을 감안하여 정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.

#### (회의자료 설명)

- (위원장) 천천히 자료 확인하신 뒤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- (신상두 위원) 위원점유율 현황에 대한 자료는 상임위원회를 1명 당 몇 개의 상임위원회를 맡느냐에 대한 내용입니까?
- (정책기획관) 네, 그렇습니다. 2017년에 서울시가 1.11명이면 한 의원이 위원회 1개 정도를 맡는다고 볼 수 있다면 세종시는 186명으로 한 의원이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- (위원장) 지난 회의 때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의 자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(이희경 위원) 자료를 미리 보고 왔습니다. 검토해보고 질문하겠습니다.
- (김지훈 위원) 설명자료에 소득수준을 근로소득수준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?

- (의회협력담당)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서 과세대상근로소득을 참고하도록 나와 있습니다.
- (위원장) 일단 오늘은 의정비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방식을 정해야할 것 같습니다. 인상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.
  - 우선 논의를 좁히기 위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.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. 이 중 의정활동비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최고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는데 이견이 없으시다면 기존의 월정수당은 월 150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월정수당의 인상폭 결정 논의에 집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- (다른 위원들) 동의합니다.
- (위원장)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의정활동비은 월 150만원 지급으로 결정하고, 월정수당 결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회협력담당님, 저희가 정해야 하는 것이 기준금액, 최저금액, 최고금액입니까?
- (의회협력담당) 네, 그렇습니다.
- (이영민 위원) 기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동결되었다고 보입니다. 제 생각에는 대전광역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청남북도에 준하도록 월정수당이 올라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난 회의에도 말했듯이 시·도 최저수준은 면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- (위원장) 광역단체 중 최하수준은 면하고, 인근 충청권의 수준까지는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.
- (전용구 위원)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. 충청권의 평균값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- (위원장)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이 상이한 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.

- (이영민 위원) 만약 월정수당을 정하면 내년부터는 동결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?
- (정책기획관) 이번에 4년치를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020~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이내에서 인상하거나 동결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(위원장) 우선 2019년도의 인상범위를 결정하고 그 후에 2020~2022년의 인상범위를 결정하겠습니다.
- 제안 다양성을 위해 제가 위원으로서 제안하겠습니다.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민수 증가율, 재정능력 즉, 재정자립도 증가율,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대해 가중치를 동일하게 둘을 때 세종시는 모두 증가요인이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주민수 증가율이나 재정자립도 증가율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각 항목의 가중치를 균등적용 하거나 특정항목에 가중치를 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.
- (전응구 위원) 그렇게 생각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충청권 평균값을 제안을 해본 것인데 금지사항이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
- (이영선 위원)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전 산식으로 계산해 본 금액도 고려하는 데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산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상한액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인상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- (서성규 위원) 주변지역에 근접하게 결정하거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준하게 결정하는 것은 금지사항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저희의 결정이 4년 후 결정에 기준이 된다고 하면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으로는 타 광역 자치단체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, 재정자립도, 의원 1인당 의안처리 규모 등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광역 지자체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계산해서 가중치를 균등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.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지역 주민수, 재정자립도,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회활동실적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- (위원장) 개인적으로 서성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. 다만 이번 결정이 4년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요인들을 반영해서 공식화해보자는 서성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.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
- (김지훈 위원) 서성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더 제안해 보겠습니다. 지난 가이드라인에는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빠지고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반영되도록 되어있습니다. 저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완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인구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을 참고한다면 단서조항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. 이번 인상률이 다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번에는 다른 자치 단체보다 낮은 금액을 바로잡는 현실화에 입각한 인상이 되어야 할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르도록 이번 결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
- (위원장) 일단 19년 인상금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(이영선 위원) 의원 1인당 인구수에 집중하면 현재 의원정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어 인상요인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수로 명시했기 때문에 큰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.
- (변영호 위원) 전체적으로 세종시 의회의 의정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있어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고려 요소들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인상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방의회 의원들은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겸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지도 의회의 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의원들이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월정수당이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.
- (이희경 위원) 대부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. 저도 역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인상에 대해 동의합니다.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(위원장)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비의 현실화에 대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잠시 정회한 뒤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(의사봉 3타)

(정회)

□ (위원장)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(의사봉 3타)

- 인상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. 광역단체 중 최저 수준은 면하고 충청권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,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전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참고해 의정비를 현실화 하자는 의견, 타 광역시의 의정비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, 의원 1인당 인구수, 재정자립도, 의원 1인당 의안처리건수 등을 비교하고 산식을 정해 인상·인하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구체적인 금액은 더 논의해보아야겠지만 이 세 가지 안에 대해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전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의정비에 맞춰 현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인구수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것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구수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와 주민평균소득, 재정자립도,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비교해보면 세종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 맞춰야한다는 현실화의 필요성은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.
- (이영선 위원) 중요한 것은 잠정결정금액인 것 같습니다. 결정금액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잠정결정금액을 어떻게 현실화할지, 합리적인 선이 어디쯤일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- (위원장) 그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타 광역 지자체의 의정활동 실적, 재정자립도,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의 요인을 고려해 플러스, 마이너스 감안해 결정하자는 서성규 위원님의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안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검증해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(이영민 위원) 너무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지자체 수준에 맞춰 인상하게 되면 여론에 큰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국 시·도 최저수준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현실화했다는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.
- (정책기획관) 타 지자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금지사항에 속합니다. 결국 인구규모와 재정상태가 상이한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것이 됩니다. 광역자치단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시된 요인들을 고려해 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- (이영민 위원) 타시도와 의정비가 이미 많이 차이나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.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많이 올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 참 힘든 것 같습니다.
- (신상두 위원) 결국 올려주자는 의견일치는 봤으니 왜 올려줘야 하는지를 시민들이 보았을 때 이해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고 가중치를 적용해서 산식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
- (이영선 위원) 지역 주민수 및 재정자립도에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한 안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선에서 결정하면 크게 비합리적이 않은 것 같고 인근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큰 비난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. 이 정도 수준에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(위원장) 의정비가 계속 동결 되어왔기 때문에 현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잠정금액 결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금액을 정하는 것에 있어 단순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다들 고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.
  - 제 생각에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준비한 뒤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?

- (이영민 위원) 동의합니다.
- (서성규 위원) 제가 말씀드린 의원1인당 인구수나 재정자립도는 지역 주민수 증가율이나 재정자립도 증가율과 비슷한 요인입니다.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의원 1인당 의안처리 규모를 수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
- (김지훈 위원) 저는 이 금액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충실도를 수치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시야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경제적 걱정 없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받는 것에 대해 의회업무실적을 수치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- (위원장) 현실화라는 같은 의견 속에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화하는 과정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 요소에 가중치를 어디에 둘지 고민해 보고 다음 회의 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. 의견 어떠십니까?
- (정책기획관) 의정활동 실적은 기준연도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행안부에도 의정활동은 정성적으로 재량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(기획조정실장)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월정수당 부분을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, 재정능력, 보수인상률, 의정활동 실적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앞에 3가지 요인은 계량적으로 판단 할 수 있지만 의정활동 실적은 기준에 따라 값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실적은 정성적으로 고려하셔서 플러스-마이너스로 반영하면 4가지 모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

□ (위원장) 의정활동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도,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려요소들에 다양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반영하는 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생각해 보신 뒤 의견을 모으고 다음 회의 때 잠정 금액을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원님 모두 동의하십니까?

□ (다른 위원들) 네, 동의합니다.

□ (위원장) 그렇다면 월정수당은 다음 회의를 통해 잠정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

(의사봉 3타)

□ (위원장) 두 번째 안건으로는 2.6% 초과 인상 결정에는 모두 동의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절차 방식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민의견수렴절차 방식으로는 공청회와 전문기관을 통한 전화여론조사 방식이 있습니다. 공청회는 공청회대로, 전화여론조사는 전화여론조사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. 위원님들의 고견 제시 바랍니다.

□ (이영선 위원) 질문이 있습니다. 전화여론조사의 가장 큰 단점이 무조건적으로 최소금액으로 의견이 모이게 될까봐 우려되는 것이 단점인가요?

□ (위원장) 과연 대표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□ (이영선 위원) 둘 중 어느 것이 장점이 더 큰가로 결정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단점이 더 큰 가를 기준으로 방식을 결정하는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.

- (신상두 위원) 공청회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?
- (의회협력담당) 공청회에서는 찬반이 있고 방청인들의 의견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건입니다. 저희가 생각해본 바로는 전화여론방식에 적용하는 표준질문 문항을 공청회 오신 분들께 찬반토론 이후에 설문조사해서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.
- (정책기획관) 전화여론조사를 진행한다면 상세한 자료제공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반면 공청회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,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찬반에 대한 토론을 많은 정보 속에서 진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- (변영호 위원) 전화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해온 현실화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
- (정책기획관) 공청회 개최 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. 토론이 팽팽한 경우 의견 수렴이 어려울 수 있어 저희가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 제시해드린 것입니다.
- (전응구 위원) 전화여론조사는 성실한 응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공청회에 오는 분들은 시정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. 설명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세종시의회의 일이 과중하고 의원들이 힘쓰고 있다는 것을 공청회에서 이야기 드리면 과도한 인상이라기 보다는 현실화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- (이영민 위원) 동의합니다.

- (김지훈 위원)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.
- (이영선 위원) 공청회를 했을 때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를 고민하는 것인가요?
- (정책기획관) 결국엔 금액을 결정해야하는 부분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좁힐 지가 고민이 됩니다.
- (서성규 위원) 공청회를 하더라도 하한선, 상한선, 기준금액을 설명해드려야 합니다.
- (위원장) 다만 전화여론조사방식을 선택한다면 다수의 의견으로 나온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공청회 방식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일부 흥분한 방청객들로 인한 원활하지 못한 진행입니다.
- (이영선 위원) 그렇다면 공청회를 하고 의견만 수렴하거나 설문지를 돌리는 것은 선택사항인 것입니까?
- (의회협력담당) 네,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. 공청회 개최시, 주민의견수렴 결과 도출방법은 관련법령과 행정안전부 가이드 라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위원님들의 의견 중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
- (이영선 위원) 의견수렴이 되면 위원회가 구속이 됩니까?
- (의회협력담당) 반드시 수렴하도록 되어있지만 공청회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. 친반만 있고 수렴결과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더 필요합니다.
- (위원장)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돌려보자는 방안이 나온 것이군요.

- (전용구 위원) 설문조사 시 반드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질문 문항들만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적당한 문항을 새롭게 만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- (위원장) 공청회 개최 시 공청회에서 나온 여론을 어떻게 판단하고 반영해야할지는 저희가 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.
- (이영민 위원) 자료를 이해시켜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.
- (이희경 위원) 전화여론조사 시 요즘엔 집 전화를 거의 안 쓰고, 핸드폰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.
- (위원장) 이야기 하다 보면 단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.
- (신상두 위원) 현실화를 하려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
- (이희경 위원) 저도 공청회 방식에 찬성합니다.
- (이연숙 위원) 저도 동의합니다.
- (이영민 위원) 위원장님이 공청회 전 과정의 주재자가 되셔야 해서 힘드시겠지만 공청회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.
- (다른 위원들) 동의합니다.

□ (위원장)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공청회 방식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. 그러면 10명 중 10명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져 주민의견수렴방식은 공청회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체적인 잠정금액 결정과 공청회사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
(의사봉 3타)

□ (위원장) 다음 회의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(다음회의일정 논의)

□ (위원장) 다음 회의는 2018년 12월 3일 16:00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(의사봉 3타)

- 이것으로 제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